

1. 개정이유

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증명서 신설, 면허 취득자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면허증명서를 출력하여 발급 및 활용이 가능하도록 상장형 서식을 추가하는 등 국민편의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

2. 주요내용

- 가.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 편의 및 활용성을 높이고 면허자격 증명 기준을 위한 근거 마련(안 제8조의2)
- 나.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자격 증명서 신청을 위한 신청 방식 및 서식 추가 (안 별지 제4호의6서식)
- 다. 면허 취득자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자격 증명서를 출력하여 발급 가능 하도록 서식 추가(안 별지 제9호의2서식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해당사항 없음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- 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8조의2(면허 증명서의 발급 등) ① 제8조에 따라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그 면허를 증명하기 위하여 국문 및 영문의 면허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면허 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별지 제4호의6서식의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증명 신청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

③ 해양경찰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증명서를 즉시 발급해야 한다.

별지 제4호의6서식 및 별지 제9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증명 신청서

접수번호	접수일	발급일	처리기간	즉시
신청인	성명	국문	생년월일	
		영문		
신청면허	면허종별		면허번호	
신청내용	용도		신청수량	
	형식		수령방법	
	국문 [] 영문 []		온라인 발급	

「수상레저안전법」 시행규칙 제8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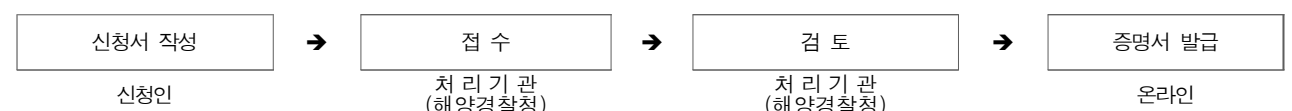
해양경찰서장 귀하

첨부서류	1. 신분증(주민등록증, 여권 등) 사본 1부
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

유의사항

1. 성명, 생년월일, 면허번호는 면허증에 기재된 것과 동일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.
2. 영문 성명은 여권에 기재된 것과 동일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.

처리절차



제 001호(No. 001)

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증명서
(Power-driven water leisure craft Operator's Certificate)

성 명 (Name) :

생년월일 (Date of Birth) :

면허종별 : 제1급 조종면허, 제2급 조종면허, 요트조종면허

(Type of License : 1st·2nd Class Boat or Yacht Operation)

면허번호 (License No.) :

갱신기간 (Renewal Period of License) :

면허취득일 (Date of Acquiring License) :

사진
(3cm×4cm)

「수상레저안전법」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자격이 있음을 증명합니다.

This is to certify that the above named person is qualified to be an operator of the power-driven water leisure craft as above pursuant to Article 4 of the Water-related Leisure Activities Safety Act.

년 월 일
YYYY. MM. DD.

해양경찰청장
Commissioner General of Korea Coast Guard

직인
seal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8조의2(면허 증명서의 발급 등)</u> ① 제8조에 따라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그 면허를 증명하기 위하여 국문 및 영문의 면허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. ② 제1항에 따라 면허 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별지 제4호의6서식의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증명 신청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 ③ 해양경찰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증명서를 즉시 발급해야 한다.